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205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오영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규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2. 1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19가단2270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피고와 망 C 사이에 포천시 D 임야 2,536㎡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127,956,49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956,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피고는 항소심에서 C에게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적극재산 외에도 합계 79,417,204원 상당의 추가 적극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게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소극재산 외에도 합계 91,955,509원 상당(F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1,955,509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0원)의 추가 소극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의 항소심 주장 및 관련 자료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6쪽 도표 아래 5줄부터 7줄 ‘등 참조)’까지를 삭제하고, 14줄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